

건설정책리뷰 2016-0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이종광

2016.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박근혜 정부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금지 등 ‘강화된 하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새로 도입된 강화된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 건설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정책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적 수준에서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총 31개의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하고(본문 표 3-1 및 표 3-2 참고), 하도급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5,000개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0개의 유효 응답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여 ‘별로 없다’에 75점, ‘보통’에 50점, ‘다소 있다’에 25점,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함.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공정거래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1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70점으로 조사되었음(항목별 체감도 점수는 본문 표 4-1 참고).
- 조사대상 5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부당특약 6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점, 부당감액 77점, 부당한 위탁취소 79점, 부당반품 83점으로 조사되었음(본문 표 4-2 참고).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불공정거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요 약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체감도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항목과 체감도 점수가 낮은 하위 5개 항목을 선별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작동실태가 양호한 항목과 그러하지 아니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음(본문 표 5-1, 표 5-2, 표 5-3 참고).
 - Top 5 항목은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 부당감액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나타났음.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반품하는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는 산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Bottom 5 항목은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나타났음. 이번 정부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부당특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는 부당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개별 정책은 물론 실태조사와 현장조사에서도 체감도 점수가 낮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함.

목 차

1. 배경 및 목적	1
2. 강화된 하도급제도의 주요 내용	4
3.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및 방법	7
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0
5. 정책적 시사점	19
(부록)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설문지	

1. 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요소, 전문분야 기술, 관리기법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대규모 설비를 설치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장치산업과 달리 일회적 수주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체로 일관 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생산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방식과 생산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체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 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원도급 건설업체로부터 전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를 ‘하도급 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원도급 건설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간의 계약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힘의 격차가 가장 큰 요인임. 원도급 건설업체가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자 간의 계약적 지위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힘의 우열이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원도급 건설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양상은 원도급 건설업체가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이든 결과적으로 하도급 건설업체의 손실로 귀결됨. 즉 하도급 건설업체가 얻어야 할 이익이 원도급 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것임.

- 건설산업에서는 오랫동안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원도급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하는 외주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은 일반화된 생산방식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종합건설업체 완성공사원가통계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건설공사 외주비율은 평균 53.66%로 조사되었음. 최근 10년간 외주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4.89%, 2007년 55.43%, 2008년 56.41%, 2009년 54.63%, 2010년 55.50%, 2011년 54.23%, 2012년 56.12%, 2013년 53.93%, 2014년 53.83%로 나타남(대한건설협회).
- 특히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장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임.
- 건설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산업은 GDP내 투자 비중이 14%대를 유지하고 있고 취업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 기간 산업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시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고착되어 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새로운 ‘강화된 하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1-1〉 강화된 하도급제도의 내용 및 시행일

내 용	시행일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13. 11. 29.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도급법 개정)	'13. 11. 29.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하도급법 개정)	'14. 2. 14.

- 정부는 이들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취지로 강조한 바 있음.
 - 이들 제도 중 특히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는 건설하도급 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하도급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본 조사는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를 통해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신규도입 제도의 작동실태와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화된 하도급제도'의 주요 내용

○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2013.11.29. 시행)

- 종전에는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유용(2011.6.30.부터 적용)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항,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네 가지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부당특약 금지조항 신설(2014.2.14. 시행)

-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나,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음.
-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하도급법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함께 도입하였음.

3.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기업

-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31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체감도 조사대상 범주 및 항목

- 신규 도입된 건설하도급과 관련된 5개 범주 31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
- 2015년 1년 간 발생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함.

〈표 3-1〉 대상행위 범주 및 항목

행 위	범 주	항 목
부당특약	부당특약	10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부당한 위탁취소	2
	부당감액	7
	부당반품	4

- 조사대상 31개 항목의 상세내용은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대상 항목 상세내용

범주	항 목
1.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3.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4.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재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마킹하게 함.
- 체감정도 단계별로 <표 3-3>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함.

<표 3-3> 단계별 배점

단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배점	100	75	50	25	0

- <표 3-4>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항목별 응답을 각각에 대응하는 점수로 전환하여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가중 평균한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표 3-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 방식

$$\frac{\text{전혀 없다} \times 100 + \text{별로 없다} \times 75 + \text{보통} \times 50 + \text{다소 있다} \times 25 + \text{매우 많다} \times 0}{\text{전체 응답수}} =$$

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1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70점으로 조사되었음.
-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표 4-1>과 같음.

<표 4-1> 항목별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1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9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 부담 약정	56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6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5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9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5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6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0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4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
3.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9
4.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9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재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1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4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2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3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과정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체감도 점수는 절대치가 아닌 상대적인 점수이며, 체감도 점수가 높다고 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부당반품 범주 ①번 항목(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은 84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부당특약 범주 ⑥번 항목(재작업, 추가 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은 56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5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표 4-2>와 같음.

<표 4-2>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범주	1.부당특약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부당한 위탁취소	4.부당감액	5.부당반품
체감도 점수	61	66	79	77	83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반품에 대한 체감도 점수가 83점으로 가장 높으며,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79점, 감액금지 77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점이고, 부당특약 금지가 61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음.
- 전체 체감도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부당반품(83점), 부당한 위탁취소(79점), 부당감액(77점) 등 세 가지 범주는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6점), 부당특약(61점) 두 가지 범주는 전체 체감도 점수 7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4-3>과 같음.

<표 4-3>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7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6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5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9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6

- 부당특약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1점.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항목(67점)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항목(56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 모두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당특약 금지 대상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4-4>과 같음.

<표 4-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건적 또는 거짓 건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6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5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4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0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6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72점)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60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이 6개로 나타났음. 특히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60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64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65점) 등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음.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항목의 공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표 4-5>와 같음.

<표 4-5>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9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0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9점. 체감도 점수는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항목(79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항목(70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70점보다 높으며,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 항목 모두 70점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거부 보다는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6>과 같음.

<표 4-6>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1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9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81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73점)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기변동 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하도급 대금 감액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당감액 범주의 체감도 평균점수는 77점.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7개 항목 모두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체감도 점수 70점을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7>과 같음.

<표 4-7>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4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3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2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

-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 (84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82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83점으로 조사대상 5개 범주 중에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음. 부당반품에 속하는 4개 항목 모두 체감도 점수도 80점대로 나타나 부당반품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에서 목적물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점도 체감도 점수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4-8>은 조사대상 5개 범주별로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한 <표 4-3>~<표 4-7>을 묶어 하나로 나타낸 것임.

<표 4-8>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배열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부당특약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7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6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5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9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
	⑥ 재직업·추가직업·보수직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6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6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5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4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0
3.부당한 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9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0
4.부당감액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1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9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3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2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

○ 조사대상 5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별 체감도 점수를 5점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음. 조사대상 범주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간에 차이가 있음.

<표 4-9> 체감도 점수 구간별 항목 분포

범주	항목	체감도 점수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86-90
1.부당특약	①	59		▨						
	②	57		▨						
	③	61			▩					
	④	69				▨				
	⑤	63			▩					
	⑥	56		▨						
	⑦	66				▨				
	⑧	65			▩					
	⑨	61			▩					
	⑩	59		▨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65			▩					
	②	66				▨				
	③	72					▨			
	④	68				▨				
	⑤	60		▨						
	⑥	67				▨				
	⑦	64			▩					
	⑧	70				▨				
3.부당한 위탁취소	①	80						▩		
	②	79					▨			
4.부당감액	①	73					▨			
	②	74					▨			
	③	79						▩		
	④	75					▨			
	⑤	78						▩		
	⑥	81							▨	
	⑦	79						▩		
5.부당반품	①	84							▨	
	②	82							▨	
	③	83							▨	
	④	82							▨	

- 부당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대체로 55-60점 구간, 61-65점 구간 및 66점-70점 구간에, 그리고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71-75점 및 76-80점 구간에,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81-85점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50점대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5개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로 나타났음. 60점대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12개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6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6개로 나타났음. 70점대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9개인데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6개,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80점대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5개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다수를 차지함.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상위권, 부당한 발주취소 및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중위권, 부당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하위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표 5-1>은 전체 항목을 범주에 관계없이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임.

<표 5-1>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4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3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2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
4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1
3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9
4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
3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9
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
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
4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4
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
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2
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
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
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
1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7
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6
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6
1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5
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65
2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64
1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	63
1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1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1
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0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59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9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6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항목,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5개 항목을 선정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함.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Top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5-2>와 같음.

<표 5-2>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4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3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2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
4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1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1위 항목은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84점), 2위는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83점), 3위는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82점), 4위는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82점), 5위는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81점)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1위부터 4위까지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이며, 5위는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부당반품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대체로 높은 것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잘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Bottom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5-3>과 같음.

<표 5-3>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6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9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59
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0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위 항목은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6점), 2위는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점), 3위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59점), 4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59점), 5위는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60점)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1위부터 4위까지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이며, 5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당특약 범주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항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부당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및 시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에 따른 비용, 민원처리, 산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책적 대처는 물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서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세부 내역을 무시하고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낮추어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종광 연구위원(jglee@ricon.re.kr)

(부록) 체감도 조사 설문지

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을 위하여 3배 손해배상제 확대('13.11.29), 부당특약 금지('14.2.14)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15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3배 손해배상제 및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관한 체감도 평가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나 기업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 조사거래: 2015년 1년간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및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1-3페이지)
- ▲ 조时时점: 2016년 6월 17일 ~ 23일
-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 문 의 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3배 손해배상(하도급법 제35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들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하는 행위					

◆ 부당한 감액

항 목	전여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

항 목	전여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16년 11월 07일 인쇄

2016년 11월 07일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14-2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